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, 연구소, 대학 및 지원시설이 집적된 지역일 것. 다만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(이하 이 항에서 "산업단지 등"이라 한다)

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"산업단지 내"를 "산업단지 등"으로 하고, "10개"를"5개"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9조의2(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) ① 생략	제9조의2(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) ① 생략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(이하 이 항에서 "산업단지"라 한다)일 것	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, 연구소, 대학 및 지원시설이 집적된 지역일 것. 다만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(이하 이 항에서 "산업단지 등"이라 한다)
2. 산업단지 내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항공우주산업사업자(연간 총 매출액 중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)의 수가 10개 이상 일 것	2. 산업단지 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 5개 -----